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복지관련 법령(기초연금)과 다른 조항을 개정하여 수당 신청 자격을 완화 및 명확화 하고 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임실군관내 1년 거주 제한을 폐지함.(안 제3조)
- 나. 장수수당 수급 대상자를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명확화(안 제3조)
- 다.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지급으로 변경함(안 제3조,4조,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2015년 4,800천원 추가 소요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2014.7.1. ~ 2014. 7.25)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6682(2014.06.24.) -비규제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지급대 및 지급시기)”를“(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중 기초연금미수급자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급시기는 만80세가 도래한 자가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 중 “분기 60,000원”을 “월 20,000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중 “매분기초”를 각각 “매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달이 속하는 분기”를 각각 “날이 속하는 달”로 한다.

제6조의 제목“(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지급중지 및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되거나, 기타”를 “확인되거나, 그 밖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급대상자 및 지급시기) 이 조례에서 규정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지급대상자는 임실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u> 다만, 장기출타자, 국외이주자, 실종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한다.</p> <p>2. <u>지급시기는 만80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u></p> <p>제4조(지급액) 장수수당은 <u>분기 60,000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u></p> <p>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u>매분기초 15일까지</u>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상자 명부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u>매분기초 25일에</u>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개인계좌로 입금</p>	<p>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 ----- ----- ----- -----.</p> <p>1. <u>지급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중 기초연금미수급자로 한다.</u> ----- ----- -----.</p> <p>2. <u>지급시기는 만80세가 도래한 자가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u></p> <p>제4조(지급액) ----- 월 <u>20,000원</u>-----.</p> <p>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 ----- ----- ----- ----- ----- ----- <u>매월</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매월</u>----- ----- ----- -----.</p>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④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생략)

②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한다.

-----.

④ ----- 달이 속하는 달-----

--- 달이 속하는 달-----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되거나, 그 밖의 -----

----- 지체 없이 -----.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임실군 관내거주 기간(1년) 폐지로 인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기준에 부합되도록 함

나. 추계 결과

40,800천원/년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년도	대상자 수	월 지급액	총 예산	증감액
2014	150	20,000	36,000	
2015	170	20,000	40,800	4,800

3. 재원조달방안

2015년도 본예산에 군비 40,800천원 예산편성 예정

4. 작성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서 1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40,800	42,000	43,200	43,200	169,200
세 출		40,800	42,000	43,200	43,200	169,200
		170명×20천원	175명×20천원	180명×20천원	180명×20천원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